

# I . 재정운영 방향

1.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
2. 2019년 재정운영 방향
3.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

# 1.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

**도정 비전**

**평화와 번영 강원시대**

**도정 방침**

**인간의 존엄**

**도정 목표**

※ 5대 강원 중심시대

남북교류와  
평화경제  
중심

북방경제를  
넘어  
대륙중심

첨단화로  
4차산업혁명  
중심

일자리 &  
경제  
사람중심

포스트  
올림픽·문화  
중심

# 2019년도 도정방향

■ 민선 7기 2년차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는 해로 민선7기의  
 도정 비전과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

- 주요 프로젝트(공약 등)에 대한 가시화·구체화 단계에 돌입 하고,
- 국내·외 정치·경제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은 물론,
- 강원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국제강원 실현과  
 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

## 민선 7기 도정방향

- 올림픽 성공개최 + 남북평화 분위기 등 도약의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 
 위한 『강원경제의 성장판 확대』
- 강원 도민이 중심인, 강하고, 원대한 강원시대, 「평화와 번영」, 「성장과 복지」가 함께  
 공존하는 신강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주력

■ 이를 가시화하기 위한 2019 도정 핵심목표와 추진전략

## 도정 핵심목표 ⇒ 경제 활성화 + 일자리 확대

- 핵심 달성지표 : 고용율 63%, 수출 23억불,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유지

## 핵심 추진전략 ⇒ 5대 분야 17개 추진과제

남북평화 경제구축 및 평화지역 활성화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남북교류·협력 의제선점 및 평화경제제도 기반 구축</li> <li>○ 남북간 연결망 구축 가시화(에타 면제 등)</li> <li>○ 평화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본격 가시화</li> </ul>
포스트 올림픽 + SOC 확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Again 평창=평화」 분위기 재점화 및 국가지원 제도화</li> <li>○ SOC 구축·확대 → 관광·물류·교통의 중심지 형성</li> </ul>
신강원 핵심전략 본격추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광·농정·산업·산림의 국제화·고품질화·스마트화·브랜드화                      → 신강원 전략 가시화로 고부가가치 창출</li> </ul>
도민의 삶의 질 향상	일자리&경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강원형 일자리 창출 모델 완성</li> <li>○ 도민 소득기반 중심, 지역경제 체질개선과 활력 제고</li> </ul>
	복지&안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맞춤형 복지확대로 강원형 사회복지 모델 완성</li> <li>○ 『365』 건강·안전한 지역공동체 조성</li> </ul>

## 2. 2019년 재정운영 방향

### 재정여건

- 도세는 부동산대책(9.13.) 등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 불확실하나, 금년보다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, 의존수입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증가 예상
  - 지방세 11.8%, 지방교부세 9.7%, 국고보조금 10.7% 등
- 세출수요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평화지역, 남북교류, 일자리, 저출생 등 핵심 현안사업 추진, 복지수요 등 국고보조사업 대비 부담금과 계속사업 추진 등으로 대폭 증가
  - 인건비 5.9%, 법정경비 7.3%, 사업예산 11.2% 등

### 중점 편성방향

- 올림픽 이후 유산조성,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
- 3대 역점사업(저출생, 일자리, 고령화) 집중 투자를 통한 재난 수준의 국가적 사회문제 선도적 해소 지원
- 신관광, 신농정, 신산업, 신산림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신강원 구현 및 민생경제 활성화 투자 확대
- 도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 시범사업 반영

## 분야별 주요사업

(단위 : 억 원)

### ① 남북교류 협력과 포스트 올림픽 실현

- 남북교류협력 기금 출연 50,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개최 15
-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 24, 올림픽 경기장 유지관리 85

### ② 평화지역 활성화

- 평화지역 문화예술 축제 15, 평화지역 상설 문화공연 28,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80
-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 101,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25

### ③ 신강원 구현

- 양양·원주 공항 활성화 36, 밭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24
- 수소충전소 설치 60, 도시숲 조성 34

### ④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

-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243, 강원일자리 공제 154,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80
- 장애인 일자리 55억, 어르신일자리 686

### ⑤ 도민이 행복한 튼튼한 강원경제 구축

- 수출시장 다변화 33,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78,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5
- GTI 국제무역·투자 박람회 22, 지방도 확포장 850, 지방도 유지보수 261

### ⑥ 강원 문화·관광·체육의 명품화, 세계화

- 도 이미지 제고 80, 생활soc 체육진흥시설지원 156, 체육진흥시설 지원 232
- 강원 FC 67, 도 산하 체육단체 지원 205, 공공도서관 건립 83

## ⑦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강원형 복지모델 실현

- 아동수당 548, 가정양육수당 273, 장애인 연금 330, 기초연금 4,995
- 참전 명예수당 44, 노인돌봄서비스 132

## ⑧ 고소득 농산어업,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

-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53, 농촌 중심지 활성화 249
-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80, 연안정비 48

## 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

- 소방청사 신증축 156, 노후 소방차량 보강 98, 119구급차량 및 구급장비 보강 40
- 지방하천 정비 762, 재해위험지역 정비 513, 발 가뭄대비 종합대책 23

# 3.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

## I 기준경비

### 1 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 관리

-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편성할 수 있는 ‘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’ 통계목 신설
  - ※ '18년 신설된 ‘의원역량개발비’는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외래강사료에만 편성하도록 설정되어 있음
- 다만, 과도한 역량개발비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‘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’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관리

현 행	개 정
<p><b>제4조(기준경비)</b>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·의정운영공통경비·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.</p>	<p><b>제4조(기준경비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·의정운영공통경비·의회운영업무추진비·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.</p>
<p><b>【별표 1】지방의회 관련 경비</b></p> <p><b>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상)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, 의원국외여비 3개 통계목</li> <li>○ (총액한도 산정방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액한도 = {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× (1 + 0.297) + (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× (1 + 0.176) + (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【별표 1】지방의회 관련 경비</b></p> <p><b>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상)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, 의원국외여비, 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 4개 통계목</li> <li>○ (총액한도 산정방법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액한도 = {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× (1 + 0.297) + (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× (1 + 0.176) + (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</li> </ul> </li> </ul>



현 행	개 정																								
<p>액의 평균액 × (1+0.05)}</p> <p>* &lt;신설&gt;</p> <p>○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(최초 2018~2021년 적용)</p> <p>※ &lt;신설&gt;</p> <p>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</p> <p>4. &lt;신설&gt;</p>	<p>산액의 평균액 × (1+0.05) + (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*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× (1+0.297)}</p> <p>*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의원역량개발비(공공위탁, 자체교육)로 편성</p> <p>○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(최초 2018~2021년 적용)</p> <p>※ 2019년도에 한하여 의원 1인당 0.8백만원 범위에서 한도 조정 가능</p> <p>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</p> <p>4. 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</p> <p>① 경비성격 : 지방의회 의원의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</p> <p>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<b>【별표 11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그룹</th> <th>편성목</th> <th>설정(통계목 포함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5">200</td> <td rowspan="5">205의 회비</td> <td>07. <u>의원역량개발비</u></td> </tr> <tr> <td>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.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- 국가기관 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2.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-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※ 교통비,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</td> </tr> <tr> <td>08. <u>의장협의체 부담금</u></td> </tr> <tr> <td>09. <u>의원국민연금부담금</u></td> </tr> <tr> <td>10. <u>의원국민건강부담금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그룹	편성목	설정(통계목 포함)	200	205의 회비	07. <u>의원역량개발비</u>	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.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- 국가기관 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2.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-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※ 교통비,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	08. <u>의장협의체 부담금</u>	09. <u>의원국민연금부담금</u>	10. <u>의원국민건강부담금</u>	<p><b>【별표 11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b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그룹</th> <th>편성목</th> <th>설정(통계목 포함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6">200</td> <td rowspan="6">205의 회비</td> <td>07. <u>의원역량개발비(공공위탁, 자체교육)</u></td> </tr> <tr> <td>좌동</td> </tr> <tr> <td>08. <u>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</u></td> </tr> <tr> <td>1. <u>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</u></td> </tr> <tr> <td>09. <u>의장협의체 부담금</u></td> </tr> <tr> <td>10. <u>의원국민연금부담금</u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11. <u>의원국민건강부담금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그룹	편성목	설정(통계목 포함)	200	205의 회비	07. <u>의원역량개발비(공공위탁, 자체교육)</u>	좌동	08. <u>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</u>	1. <u>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</u>	09. <u>의장협의체 부담금</u>	10. <u>의원국민연금부담금</u>			11. <u>의원국민건강부담금</u>
그룹	편성목	설정(통계목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
200	205의 회비	07. <u>의원역량개발비</u>																							
		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.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- 국가기관 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2.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 -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※ 교통비,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																							
		08. <u>의장협의체 부담금</u>																							
		09. <u>의원국민연금부담금</u>																							
		10. <u>의원국민건강부담금</u>																							
그룹	편성목	설정(통계목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
200	205의 회비	07. <u>의원역량개발비(공공위탁, 자체교육)</u>																							
		좌동																							
		08. <u>의원역량개발비(민간위탁)</u>																							
		1. <u>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</u>																							
		09. <u>의장협의체 부담금</u>																							
		10. <u>의원국민연금부담금</u>																							
		11. <u>의원국민건강부담금</u>																							

## ②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 정비 (별표 2)

- 소방서장 및 119안전센터장에 대하여 편성 근거 명시
  - 또한, 직제상 119안전센터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119구조대, 119구급대, 119구조구급대 등에 대하여도 편성할 수 있도록 확대

현 행	개 정
<p><b>【별표 2】 1. 기관운영업무추진비</b></p> <p>① 편성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,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·도 : 3급 이상(다만, 본청의 기획관, 감사관,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및 4급 사업소장* 포함 가능)</li> </ul> </li> </ul> <p>*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</p> <p>※ &lt;신설&gt;</p>	<p><b>【별표 2】 1. 기관운영업무추진비</b></p> <p>① 편성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좌동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·도 : 3급 이상(다만, 본청의 기획관, 감사관, 공보관 등 국장급 4급 보조기관 및 4급 사업소장*(소방서장) 포함 가능)</li> </ul> </li> </ul> <p>*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경우 5급 상당 포함 가능</p> <p>※ 119안전센터장·구조대장·구급대장·구조구급대장 포함 가능</p>

## ③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조정 대상 및 범위 확대 (별표 2)

-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20%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였으나,
- 국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치단체장,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·국장에 대하여 50%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

현 행	개 정
<p><b>【별표 2】 4. 직책급업무수행경비</b></p> <p>주)</p> <p>8) <u>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</u>에 대하여는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<u>20% 범위</u>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</p>	<p><b>【별표 2】 4. 직책급업무수행경비</b></p> <p>주)</p> <p>8) <u>자치단체의 단체장,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·국장</u>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<u>50%범위</u>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</p>

**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개선 (별표 2)**

- 과에 소속된 팀·계 등이 지역(읍·면·동)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부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할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

현 행		개 정	
<b>【별표 2】 5. 부서운영업무추진비</b>		<b>【별표 2】 5. 부서운영업무추진비</b>	
구분	기준액	구분	기준액
정원 5인이하 실·과	월 100,000원	좌동 ※ 실·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지가 다른 지역 (읍·면·동)인 경우 분할 가능 (인원수에 따라 기준액 적용)	좌동
정원 10인이하 실·과	월 175,000원		
정원 15인이하 실·과	월 250,000원		
정원 20인이하 실·과	월 300,000원		
정원 25인이하 실·과	월 350,000원		
정원 30인이하 실·과	월 400,000원		
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	5,000원 추가		

**5 특정업무경비 선택항목 추가편성 시 최저 한도 설정 (별표 2)**

- 2018년부터 선택항목은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4년 단위로 자율 결정하였으나,
  - 선택항목 총액이 작은 자치단체는 산정방식에 따른 추가편성분이 과소하여 자율적으로 제도 운영이 어려운 점 개선
- 산정방식에 따른 추가편성분이 5백만 원 미만일 경우 5백만 원까지 추가편성 가능

현 행	개 정
<b>【별표 2】 6. 특정업무경비</b>	<b>【별표 2】 6. 특정업무경비</b>
② 지급대상 - 선택항목은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출대상과 금액을 자율 결정하되,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	② 지급대상 - 좌동

현 행	개 정
<p>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× 최근 3년간 당초예산(일반+특별) 평균 증가율의 1/2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</p> <p>※ &lt;신설&gt;</p> <p>-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(예 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)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</p> <p>※ &lt;신설&gt;</p>	<p>※ 다만, 위 산정방식에 따른 추가편성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 5백만원까지 증액하여 추가편성할 수 있음</p> <p>- 좌동</p> <p>※ 다만, 2019년도 개선사항 반영을 위하여 지급대상과 금액에 대한 2018년도 기 결정 사항에 대해 2019년도 한해에 한하여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기 조정은 2022년도 편성시 실시</p>

## ⑥ 특정업무경비 공통항목 지급대상 정비 (별표 2)

- 공통필수항목(5종)은 기준액에 따라 지급대상 및 월액 규모 결정, 다만, 특사경은 ‘직무전체’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에 한하여 지급
- 특사경의 업무특성상 직무의 일부를 전담하는 조직(전담팀, 전담계)의 담당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

현 행	개 정
<p><b>【별표 2】 6. 특정업무경비</b></p> <p>③ 기준액</p> <p>주)</p> <p>6)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<u>직무전체</u>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(계 또는 팀)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(사·도 5급이하, 사·군·구 6급이하)</p>	<p><b>【별표 2】 6. 특정업무경비</b></p> <p>③ 기준액</p> <p>주)</p> <p>6)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(계 또는 팀)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(사·도 5급이하, 사·군·구 6급이하)</p>

## 2

# 세입·세출 예산과목

### 1 세입 예산과목 정비 【별표 8】

- 법령(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등)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
- 자치구 및 시·군 조정교부금 산정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 및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과목 분리 운영

현 행		개 정	
<b>【별표 8】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</b>		<b>【별표 8】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</b>	
222	부담금	222	부담금
	222-02 일반부담금 4. <u>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</u>		222-02 일반부담금 4. <u>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부담금수입</u>
411	자치구 조정교부금등	411	자치구 조정교부금등
	<u>411-01 자치구 조정교부금</u> <u>411-02 자치구 기타 자원 조정수입</u>		<u>411-01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</u> <u>411-02 자치구 특별 조정교부금</u> <u>411-03 자치구 기타 자원 조정수입</u>
421	시·군 조정교부금등	421	시·군 조정교부금등
	<u>421-01 시·군 조정교부금</u> <u>411-02 시·군 기타 자원 조정수입</u>		<u>421-01 시·군 일반 조정교부금</u> <u>421-02 시·군 특별 조정교부금</u> <u>421-03 시·군 기타 자원 조정수입</u>
511	국고보조금등	511	국고보조금등
	511-02 <u>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</u>		511-02 <u>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</u>

## ② 세출 예산과목 정비 【별표 11】

### □ 사회성과보상금 신설

- 사회성과보상사업 수행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통계목 신설

현 행		개 정	
<b>【별표 11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b>		<b>【별표 11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b>	
301	일반보상금	301	일반보상금
	11. <신설>		11. 사회성과보상금
	1. <신설>		1.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회성과보상사업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경비
	11. 기타 보상금		12. 기타 보상금

### □ 기타 세출 예산과목 정비

- 공공운영비의 효율성 측면에서 인터넷, 데이터 등을 포함 가능할 수 있도록 ‘전화료’를 ‘통신료’로 변경
- 청원경찰 관련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(제30조)에 따라 국외여비 편성근거 명시  
\* 청원경찰 국내여비 편성근거는 공무원 국내여비(202-01)에 명시

현 행		개 정	
<b>【별표 11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b>		<b>【별표 11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b>	
201	일반운영비	201	일반운영비
	02. 공공운영비		02. 공공운영비
	1. 공공요금 및 제세		1. 공공요금 및 제세
	나. 전보료 및 <u>전화료</u> 회선사용료		나. 전보료 및 <u>통신료</u> 회선사용료
202	여비	202	여비
	03. 국외업무여비		03. 국외업무여비
	2. <신설>		2.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(청경 등)의 국외업무여비

○ 기타 법령 명칭 변경, 부합하지 않는 부분 등 개선

현 행		개 정	
<b>【별표 11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b>		<b>【별표 11】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</b>	
201	일반운영비	201	일반운영비
	01. 사무관리비		01. 사무관리비
	1. 일반수용비 자. 기타 8) <u>외국환관리규정 제6조의 규정</u> <u>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, 전</u> <u>송금, 우편송금수수료와 공모</u> <u>지방채발행제경비</u>		1. 일반수용비 자. 기타 8) <u>외국환 대체송금, 전송금, 우편</u> <u>송금수수료와 공모지방채발행</u> <u>제경비</u>
	5. 급량비 가.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) 주식대, 부식대,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, 연초대		5. 급량비 가.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1) 주식대, 부식대,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
308	자치단체등 이전	308	자치단체등 이전
	09.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		09.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
	1. 「 <u>향토예비군 설치법</u> 」		1. 「 <u>예비군법</u> 」

### 3 기타 보완사항

#### 1 사업예산제도 관련 보조사업 관리 개선 【별표 10, 별표13】

- 보조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또는 시·도의 보조사업명을 그대로 사용(1:1 설정)하도록 사업간 ‘합병불가’를 명시
- 이월된 보조사업의 경우도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‘1:1 설정, 분리·합병 불가’ 추가 명시

현 행	개 정
<b>【별표 10】 세출 예산사업별 분류</b> 4. 세부사업의 설정 ○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·도의 보조사업명(세부사업명)을 그대로 사용(1:1 설정)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함이 바람직	<b>【별표 10】 세출 예산사업별 분류</b> 4. 세부사업의 설정 ○ 보조재원 포함사업은 중앙부처 또는 시·도의 보조사업명(세부사업명)을 그대로 사용(1:1 설정, 합병불가)하여 사업간 연계성을 유지해야 함
<b>【별표 13】 사업예산 운영기준</b> 4. 예산의 이월 ○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으로 관리	<b>【별표 13】 사업예산 운영기준</b> 4. 예산의 이월 ○ 이월예산은 다음연도에 기 구조화된 동일 사업목적을 가진 세부사업으로 관리 ※ 보조사업의 경우 1:1 설정, 분리·합병 불가

#### 2 지방예산 통계처리 관련 중복공제 대응체계 개정 (별표14)

- 적정한 내부거래 처리를 위하여 예산과목 중복공제 대응체계 개정  
 ※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